



개인용
약관 (2023.09.07)



1566-1566
www.axa.co.kr

AXA손해보험주식회사

AXA General Insurance Co.,LTD.
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길월동)
한진중공업빌딩 11층

자동차보험약관 개인용

금소법 시행령 22조 4항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적용일자 2023. 09. 07
제작일자 2023. 08. 31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는 AXA손해보험!

AXA손해보험은 출범 이래 수많은 혁신적인 시도들로 시장을 놀라게 해오고 있으며,
이제 자동차보험을 넘어 장기/일반보험 분야로 그 성공과 혁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XA손해보험은 고객중심의 생각과 혁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1:1 보상상담서비스를 도입하였고,
국내 최초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모바일을 통한 차별화된 보상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상해, 장기보험으로까지 사업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여준 혁신과 편리한 서비스를 이제 일반보험 상품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AXA손해보험을 필요로 할 때, 편리한 서비스를 최고의 품질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며, AXA손해보험은 혁신과 신뢰의 선도 주자로서 고객 여러분들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발생 즉시 정차 후 사고내용 확인 및 부상자 구호(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 사고 발생시 최단거리에서 정지하고 사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부상 상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해주세요.
- 만약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빵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고표시 및 사고정황 증거 확보

- 사고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차량위치, 사고장소, 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해주세요.
- 사고목격자(연락처)를 확보하고 차대차사고의 경우 쌍방이 연락처를 교환해주세요.

③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사고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④ 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 접수(도로교통법 제54조 2항)

- 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접수해주세요. (AXA 사고 접수: 1566-1566, 내선번호 3번)

계약 내용 변경 시 유의사항

다음의 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경우 당사에 꼭 연락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콜센터 1566-1566 내선 4번, 1566-2266)

①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변경된 경우

③ 보험기간 중도에 자동차를 바꾸신 경우

④ 그 외 보험계약 당시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고객 안내문을 못받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66-1566 또는 1566-22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회사,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위탁 회사 및
기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이하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활용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중단 신청

1.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리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접수 : 당사 홈페이지 (www.axa.co.kr) | 전화접수 : 1566-1566
서면접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가길 4 한진중공업빌딩 12층 AXA손해보험주식회사

2.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전화 : 1566-1566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가길 4 한진중공업빌딩 12층 AXA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 02-3702-854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 7, 8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기획조사부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1.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

2.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전화 : (02)3145-7518

인터넷 : www.fss.or.kr

• 대한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전화 : (02)3702-8585

인터넷 : www.knia.or.kr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 자동차(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3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6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16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20
제1장 배상책임	20
제1절 대인배상Ⅰ	20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20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21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23
제1절 자기신체사고	23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4
제3절 자기차량손해	26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30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30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32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33
제4편 일반사항	35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35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37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38
제4장 그 밖의 사항	41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43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49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51
〈별표 4〉 과실상계 등	52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53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62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 이 가이드북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 핵심내용을 담은 요약서
보험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약관 : 자동차보험의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 기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AXA 전국 지점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보통약관 기준)

*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당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상하는 손해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 여 가입특약별 보상하는 손해 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대인배상 I	제3조	
	대인II·대물배상	제6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	
	자기차량손해	제21조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 여 가입특약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대인배상 I	제5조	
	대인II·대물배상	제8조	
	자기신체사고	제14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9조	
	자기차량손해	제23조	
③ 청약 철회	제41조(청약 철회)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⑤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⑥ 사고발생 시 의무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⑦ 보험계약의 취소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⑧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⑨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팁

* 아래 5가지 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요약서 p.6
②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의 정의, 약관본문 내 용어설명 및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제1편 제1조(용어의정의) p.16
③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p.3~4
④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p.125
⑤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axa.co.kr), 고객 콜센터(1566-2266)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 이 요약서는 자동차보험 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①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성격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자배법에 의해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대인배상 I, 대물배상 담보입니다. 두 담보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시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미가입 기간	자가용 자동차	
	대인배상 I (상대방의 상해, 사망시)	대물배상 (상대방 차량 등 물적 손해시)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10일 초과시 1일당	4천원	2천원
최고 과태료 한도	60만원	30만원

②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 성격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 의사에 따라 담보의 추가가 자유로운 임의보험의 성격도 가집니다. 아래의 담보들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보험 담보

담보명	보상 내용
자기차량손해	고객의 차량에 직접 손해가 생긴 경우
자기신체사고	고객이나 고객의 가족이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	고객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기타 특별약관	담보에서 보상하는 내용 (긴급출동서비스, 렌트카 특별약관, 신차가액 보상 등)

2. 자동차보험 가입 단계별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① 보험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변경, 만료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유의 사항	
	구분	확인 사항
체결시	청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인적정보 및 운전자 범위 - 차량번호, 차량모델, 연식, 배기량 등 차량정보 - 보장종목(특별약관 포함) 및 보장종목별 가입금액 -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에 고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동일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사항 -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 콜센터(1566-2266)로 전화주시거나, 당사 홈페이지(www.axa.co.kr)에 접속하여 계약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유의 사항	
	구분	확인 사항
변경시	보험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정보 사항 변경시 - 운전 가능한 운전자범위 변경 필요시 - 차량을 구매하여 기존 차량 대체시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금 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가능범위 및 연령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대인배상 1만 보상) - 블랙박스 등 새로운 부속품을 추가한 경우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고,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 콜센터(1556-9635)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에 (www.axa.co.kr) 접속하여 계약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만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만기일을 꼭 기억하시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AXA는 고객님의 계약 만기일 전, 2회에 걸쳐 계약이 곧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단, 단기계약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만기안내장이 발송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만료시 안내 내용 			
	구분	안내시기	안내방법	안내대상
		1차 만기일 75일~30일 전	우편발송(일반) 또는 E-mail	기명피보험자

· 우편 외 만기안내 받는 방법
 현재 많은 AXA의 고객님들은 E-mail 및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보다 빠르게 만기 안내를 받고 계십니다.
 · 변경 요청 : 당사 콜센터 1566-963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xa.co.kr)

3. 자동차 사고시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시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상절차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보상절차



4.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①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의 기본적 내용을 이루는 표준적인 조항의 약관을 말합니다.

특별약관은 계약 체결시 특별한 희망에 따라 보통약관의 일부 내용과 다른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보통약관에 없는 특수한 약정을 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②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 보통약관 기본 5가지 보장종목

보통약관		보상내용
대인 배상	I (의무보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피해자 1인당 지급한도
		사망 최대 1억5천만원 (장례비, 위자료 등)
		후유장애 최대 1억5천만원 후유장애등급별 한도 내 실제손해액 지급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II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I」과 같으며, 「대인배상 II」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정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이 파손된 경우 계약 체결시 정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수리비용, 교환가액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급(1~14급)별 한도 내 지급
		부상 상해급수(1~14급)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 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 I」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2억 또는 5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주요내용

■ 보험료 할인 관련 특별약관

특별약관	보상내용
운전자 범위제한 및 연령제한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를 정하시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계약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시 정한 운전가능자(범위/연령)이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담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 (선·후 할인)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체결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시면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특약 가입을 위해 계약 체결시와 보험기간 만료시 각 주행거리정보를 (최초, 최종 주행거리 정보 :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 각 1장) 보내주셔야 합니다. 특약을 가입하시고 보험기간 중 운전자범위 등 가입 사항을 변경하시는 경우 계약 체결시 <u>안내드린 예상 할인(환급)</u>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할인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나눔 (서민우대) 특별약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고객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약관으로, 기명피보험자가 특약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차선이탈 경고장치 및 자동비상 제동장치 할인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 출고시 특별약관에서 인정하는 경고장치 및 제동장치가 장착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드리며 추가(옵션)로 장착한 경우 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블랙박스)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을 위해 사진 2장(자동차번호판, 차량내부에 장착된 블랙박스 사진 각 1장씩)이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를 위한 고보장 특별약관

특별약관	보상내용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보장종목과 다르게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도 함께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비교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 상해급수 한도 내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지급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손해액 (위자료+치료비 등)을 지급
자녀보상 특별약관	대리운전을 하는 자가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보상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녀학자금, 자녀부상 위로금 등)	

■ 자기차량손해와 관련된 고보장 특별약관

특별약관	가입 대상	보상내용
렌트카 특별약관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제공합니다.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자동차	<p>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 일 때 신차 구입시 납입한 취 · 등록세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로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p> <p>단,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p>
신차가액 보상담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7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신차기액보상 담보 확장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담보에 가입한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6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5. 자주하는 질문 (Q&A)

Q. 보험가입경력 인정제도가 무엇인가요?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 추가운전자가 운전한 경력이 있을 때 '보험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여, 향후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제출 및 확인을 통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운전자 범위에 따른 보험가입경력인정자 등록 대상 범위가 다른가요?

운전자 범위에 따라 등록 대상과 지정 가능한 인원이 다릅니다.

운전자 범위	보험가입경력인정자 등록 대상	지정 가능한 인원
기명피보험자 1인		해당없음
부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1인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 1인	추가운전자 지정 1인	
가족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형제, 자매 제외)	1인 ~ 2인
가족 및 형제, 자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형제, 자매 포함)	
미가입 (누구나)	기명피보험자의 가족(형제, 자매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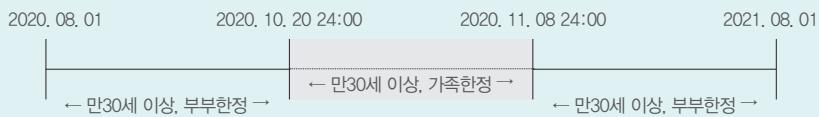
Q. 보험계약 체결시 특정한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당사 콜센터(1566-2266)로 연락하여 운전할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정기간 운전범위 확대는 신청하시는 날 24시부터 가능하오니 운전하실 기간 전에 미리 신청해주세요.

〈예시〉

보험기간 2020.08.01~2021.08.01이며 '만30세 이상 및 부부한정'으로 운전자 범위를 지정한 계약에서 2020.10.20.일 24시부터 2020.11.08일 24시까지 운전자 범위를 '기족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요청한 기간 동안만 운전자 범위가 변경되며 요청한 일정기간이 종료되면 변경 전의 운전자범위로 적용됩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기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기액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기액은 사고 발생 당시에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기액을 말합니다.

Q. 의무보험(대인 I, 대물)도 해지가 되나요?

아래와 같이 자동차손해상보장법 및 약관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②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하여 운행이 중지된 경우
- ③ 교통사고,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 ④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과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 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Q. 사고처리 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사고처리를 하셨더라도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하실 수는 있지만,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보장종목 및 특별약관에 대한 환급보험료는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임시운전자특별약관 등 일정기간 내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고 사고가 발생한 계약(담보)을 해지하시는 경우, 사고일 기준의 운전자 범위로 보험료가 계산되어 해지보험료의 환급이 아닌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기간 중 1회 이상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신 후 보험계약을 해지(또는 특약 미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대한 환급보험료는 없습니다.

Q. 12대 종과실이 무엇인가요?

사고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
|----------------------|--------------------------------------|
| ① 신호위반 | ⑦ 무면허운전 |
| ② 중앙선 침범 | ⑧ 음주운전 |
| ③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⑨ 보도 침범 |
|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 ⑩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전의무 위반 |
|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⑫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Q. 동일증권이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개인명의의 소형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하나의 보험 증권(계약)을 원계약으로 하고, 다른 차량을 추가하여 두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동일한 증권번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으로 체결한 차량들은 사고 평가시 사고점수를 균분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체결 상담시 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형차량 : 10인 이하 승용, 경승합, 1톤 이하 화물

Q. 물적활증기준금액 미만의 물적사고 처리시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의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건수별 특성요율(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 갱신 시점의 실제 적용률을 따르므로 갱신시 정확한 보험료 할증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Q.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에서 의미하는 가족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운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범위 특약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본인	법률상 또는 사실혼관계 배우자	법률상의					지명 1인	임직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기명피보험자 1인	○	X	X	X	X	X	X	X	X
부부운전자	○	○	X	X	X	X	X	X	X
가족운전자	○	○	○	○	○	○	X	X	X
가족 및 형제자매	○	○	○	○	○	○	○	X	X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	○	X	X	X	X	X	X	○	X
임직원운전자	○	X	X	X	X	X	X	X	○
미가입 (누구나)	○	○	○	○	○	○	○	○	○

※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에서 가족의 범위는 법률상 가족 범위를 말합니다.

※ 계약 체결시 정한 운전가능자(범위/연령)이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담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Q.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사고부담금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약 · 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시 사고부담금(1사고당)

책임개시일	2022. 06. 07 이전		2022. 06. 08 이후 2022. 07. 27 이전		2022. 07. 28 이후	
구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미약,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미약,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대인배상 I	1사고당 1,0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 I 한도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 II	1사고당 1억원					
대 물 배 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1사고당 500만원	1사고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1사고당 100만원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원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16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20
제1장 배상책임	20
제1절 대인배상 I	20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20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21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23
제1절 자기신체사고	23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4
제3절 자기차량손해	26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1}을 말합니다.
 (*1)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험료 계산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2}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2}
 (*1) 무보험자동차(예시) : 가. 의무보험(대인배상)만 가입한 자동차
 나.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등 위배시
 다. 손해액이 대인배상에 가입금액을 초과시
 라. 뺑소니에 의한 사고시
 (*2) 관련 법규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접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4}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증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파스 단말기)
- (*) 법령 : 자동차관리법을 뜻하며 [관련법령]의 자동차관리법 3장 제29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7.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택송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자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ჯ켓 · 팬츠 · 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 (*2) 정착: 볼트, 너트 등을 고정하여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 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기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기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기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기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기액을 말합니다.
19. 미약·약물운전: 미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징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텁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텁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텁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¹⁾ 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¹⁾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

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준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TIP.

(*)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의 부분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한만큼 하락된 가치감소분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야·악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미야·악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미야·악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책임개시일	2022. 06. 07 이전		2022. 06. 08 이후 2022. 07. 27 이전		2022. 07. 28 이후
구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음주운전, 미야, 악물운전	무면허운전, 미야, 악물운전	음주운전, 미야, 악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대인배상Ⅰ	1사고당 1,0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Ⅰ 한도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¹⁾	1사고당 500만원	1사고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1사고당 100만원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²⁾	1사고당 5,000만원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액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액

② 피보험자는 자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야·악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을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TIP.

(*)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지급 방식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공제액」이 있는 경우 (생방과실사고 등으로 일부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실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한도 내 지급
2. 「공제액」이 없는 경우 (단독사고 등으로 피보험자의 전부과실 사고에 해당) :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 ('실제 손해액' 아님)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4. 다만, 위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피용자

TIP.

(*)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위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는 다음의 손해를 말합니다.
- 가. 타자^(*)와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나.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TIP.

- (*) '타자'라는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 (***)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자연,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기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기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타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하며 타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TIP.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입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TIP.

(*)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지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중요한 부분이라면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한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TIP.

(*1) '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기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기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기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30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30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32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33
제4편 일반사항	35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35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37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38
제4장 그 밖의 사항	41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43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49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51
〈별표 4〉 과실상계 등	52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53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62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TIP.

(*1) 정당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이 지연되는 경우로는 예를 들어 추가적인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누락으로 보험사고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급 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TIP.

(*1) 현재 시점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홈페이지(www.k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해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

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건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건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건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화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인,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들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TIP.

(*) 현재 시점의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은 회사의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같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기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자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이하 '손해')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이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미약 또는 악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입류나 가입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TIP.

(*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원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보험회사가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1}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2}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 물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일정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자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3}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TIP.

- (*1)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 및 지급 제한 사항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 (*2)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3)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증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TIP.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TIP.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기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기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 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TIP.

-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 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 : } 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TIP.

(*1)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을 따릅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에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에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TIP.

(*)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일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4.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5.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7.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순서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른 목적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 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102조의3

제60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지급기준에 등장하는 “연령(나이)”은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한 만 연령(나이)을 의미합니다.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가.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치로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TIP. (*) 호프만 계수 : 상실수익액 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래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일시에 미리 받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금액의 원금에서 단리에 의한 증가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호프만계수 상세 공식은 마.호프만 계수 참고. 사망일: 2022. 1. 1 생년월일: 1989. 5. 20 보험금지급일: 2022. 7. 20 취업가능연한: 2054. 5. 19. (생년월일+65세)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2022. 7. 20~2022. 1. 1) = 6개월 19일 -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2054. 5. 19~2022. 7. 20) = 393개월 29일 최종월수 : '6개월 + (393개월+19일+29일)의 호프만 계수' = '6개월+'394개월의 호프만 계수' = 6 + 232,8279 = 238,8279 ※ 상실 수익액의 계산 〈예시〉 월 현실 소득액 : 300만원 300만원 × (1-1/3) × 238,8279 = 477,655,800원 </div>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도,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라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div>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p>나) 사업소득자</p> <p>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p> <p>〈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p> <p>(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등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탄당한 율을 적용함.</p> <p>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용어 풀이〉</p> <p>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p>〈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p>다) 그 밖의 유자격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p> <p>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용어 풀이〉</p> <p>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p>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p> <p>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그 밖의 유자격자 : 일용근로자 임금</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기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p> <p>(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p> <p>(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p>(6) 외국인 (가) 유적자</p> <p>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p> <p>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p>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기능월수	<p>(1) 취업기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기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기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기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기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 휴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만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만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기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기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 만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기능월수 〉								
	<table border="1"> <thead> <tr> <th>피해자의 나이</th> <th>취업기능월수</th> </tr> </thead> <tbody> <tr> <td>만 62세부터 만 67세 미만</td> <td>36월</td> </tr> <tr> <td>만 67세부터 만 76세 미만</td> <td>24월</td> </tr> <tr> <td>만 76세 이상</td> <td>12월</td> </tr> </tbody> </table>	피해자의 나이	취업기능월수	만 62세부터 만 67세 미만	36월	만 67세부터 만 76세 미만	24월	만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기능월수								
만 62세부터 만 67세 미만	36월								
만 67세부터 만 76세 미만	24월								
만 76세 이상	12월								
(3) 취업기능연한이 사회통념상 만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탄당한 취업기능연한 이후 만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p>(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p> <p>(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TIP.</p> <p>(*)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p>								
마. 호프만 계수: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p>〈산식〉</p>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p>i = 5/12%, n = 취업기능월수</p>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금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탄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순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시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판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1. 적극순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지동차순해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판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2.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 <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 <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 <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3. 휴업손해	<p>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용어 풀이〉</p> <p>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div>																																								

	<p>3. 휴업손해</p> <p>〈식식〉</p> $1\text{일 수입 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p>〈용어 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p> <p>나. 인정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p>〈용어 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p>다. 지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 <td>60일</td> <td>3급~4급</td> <td>30일</td>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p>5. 그 밖의 손해배상금</p> <p>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p> <p>가. 입원하는 경우</p> <p>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나. 통원하는 경우</p> <p>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상해등급	인정일수	상해등급	인정일수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인정일수	상해등급	인정일수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p> <p>(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다) 상기 (7),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p> <p>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TIP.</p> <p>(*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p>(단위: %, 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정액</th><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td>400</td><td>14% 이상 20% 미만</td><td>120</td></tr> <tr> <td>35% 이상 45% 미만</td><td>240</td><td>9% 이상 14% 미만</td><td>100</td></tr> <tr> <td>27% 이상 35% 미만</td><td>200</td><td>5% 이상 9% 미만</td><td>80</td></tr> <tr> <td>20% 이상 27% 미만</td><td>160</td><td>0 초과 5% 미만</td><td>50</td></tr> </tbody> </table>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14% 이상 20% 미만	120	35% 이상 45% 미만	240	9% 이상 14% 미만	100	27% 이상 35% 미만	200	5% 이상 9% 미만	80	20% 이상 27% 미만	16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14% 이상 20% 미만	120																		
35% 이상 45% 미만	240	9% 이상 14% 미만	100																		
27% 이상 35% 미만	200	5% 이상 9% 미만	80																		
20% 이상 27% 미만	160	0 초과 5% 미만	50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2.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기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p>〈산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기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p>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혼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항목	지급 기준
2. 상실수익액	<p>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기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p>
3. 가정간호비	<p>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거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는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지원으로 할 수 있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p> <p>(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p> <p>(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p>

TIP.

(*1)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3)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기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항목	지급 기준
2. 교환가액	<p>가. 지급대상</p> <p>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p>나. 인정기준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기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기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차료	<p>가. 대상</p> <p>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를 하는 경우 <p>(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p> <p>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할</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률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배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p>(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p> <p>(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률표 금액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 가능한 경우 <p>수리를 위해 자동차점검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p>TIP.</p> <p>(*)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에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 (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p> <p>(**)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p> <p>(*)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4. 휴차료	<p>가. 지급대상</p> <p>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p>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항목	지급 기준
4. 휴차료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p>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p>
7. 견인비용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p>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11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12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13급	40만원	80만원	15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14급	20만원	40만원	6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11급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12급	120만원	180만원	24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13급	80만원	130만원	18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14급	50만원	80만원	1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단, 간병비의 경우 책임개시일 2017.3.1일 이후 계약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p> <p>(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금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간병비의 경우 책임개시일 2017.3.1일 이후 계약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1. 과실상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1. 과실상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금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 ^(*)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 권리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액	상해 내용
1급	3천만원	<p>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2. 양안 안구 파열로 앙구 적출술 또는 앙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p> <p>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p> <p>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p> <p>8. 상원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9. 상원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고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p> <p>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p> <p>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2급	1천 5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흉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p> <p>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p> <p>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p> <p>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주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p> <p>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전완부 완전 절단(안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p> <p>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3급	1천 2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3. 단안 앙구 적출술 또는 앙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p> <p>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p> <p>7. 내부 장기 손상(장기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치료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p> <p>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p> <p>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액	상해 내용
3급	1천 200만원	<p>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p> <p>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심자인대의 파열</p> <p>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4급	1천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4. 흉부 손상 또는 복부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p> <p>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p> <p>6. 상원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상원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상원골 경부 골절</p> <p>9. 상원골 간부 분쇄성 골절</p> <p>10. 상원골 과상부 또는 상원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p> <p>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p> <p>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18. 골반화이 인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가골 또는 중골 골절</p> <p>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6. 화상, 좌장, 괴사장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p> <p>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5급	9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치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p> <p>4. 안정성 주체 골절</p> <p>5. 상원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6. 상원골 간부 골절</p> <p>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p> <p>9. 요골 경상돌기 골절</p>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액	상해 내용
5급	900만원	<p>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원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원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여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심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파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원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원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막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33차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p>
6급	7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안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터,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의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여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여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증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원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p>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액	상해 내용
6급	700만원	<p>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족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p> <p>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1. 19차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7급	500만원	<p>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p> <p>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p> <p>5. 쇠골 골절</p> <p>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p> <p>7. 견봉쇄골인대 및 오구 쇠골인대 완전 파열</p> <p>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p> <p>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p> <p>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p> <p>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p> <p>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p> <p>17. 다발성 중수골 골절</p> <p>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p> <p>19. 무지개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p> <p>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p> <p>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6. 16차 이상 18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8급	3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p> <p>3. 외상성 시신경병증</p> <p>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5. 복합 고막 파열</p> <p>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p> <p>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p> <p>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중수골 골절</p> <p>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p> <p>14. 다발성 수지골 골절</p>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액	상해 내용
8급	300만원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화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심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막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주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죽지골 골절 또는 죽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4. 죽지골 골절 또는 죽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액	상해 내용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시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헉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차 이상 5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차 이상 3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개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공통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두부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역	내용
두부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흉·복부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척주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상·하지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상·공통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영역	내용
공통	<p>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상하지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치등을 두지 않는다.</p>
상자	<p>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라. 견봉 새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새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새골인대 및 오구 새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새골인대 및 오구 새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하하지	<p>가. 양측 차골지 골절, 차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p> <p>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측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p> <p>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p> <p>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측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p> <p>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측관절을 말한다.</p> <p>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화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보험가입 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천 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 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증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천 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염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장애 급별	보험가입 금액	신체장애 내용
7급	6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을 족근중증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천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천 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장애 급별	보험가입 금액	신체장애 내용
10급	2천 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급	2천 700만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천 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 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색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보험가입 금액	신체장애 내용
13급	1천 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 고

-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굽률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상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항상 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기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 차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70
[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70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71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2]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71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1
[4]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2
[5]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3
[6]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73
[7]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4
[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4
[9]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75
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관련	77
제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관련	
[10] 주말 · 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77
제2장 자기차량손해 보상 관련	
[11]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79
[12] 신차기액보상담보(6개월) 특별약관	80
[13] 신차기액보상 확장 담보(12개월) 특별약관	81
[14]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82
[15]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82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84
[16]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84
[17]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 특별약관	85
[18]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 특별약관	87

제5편 기타	91
[19]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91
[19]-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92
[20]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94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95
[22]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96
[23]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7
[24]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97
[25] 승용차요일제(후할인) 특별약관	98
[26]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100
[27]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101
[28]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102
[29]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104
[30]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06
[3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7
[32] 대중교통수단 이용증 상해 특별약관	108
[33] 자녀 피해 보상 특별약관	110
[34]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111
[35] 자녀 할인 특별약관	112
[3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112
[37]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13
[38]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114
[39]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15
[40] 자동비상 제동장치 할인 특별약관	117
[41]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118
[42]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119
[43]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119
[44]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21
[45]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22
[46]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23
관련법규	125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70
[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70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71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2]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71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1
[4]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2
[5]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3
[6]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73
[7]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4
[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4
[9]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75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②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자를 약정 연령*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TIP.

(*)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21세	2. 만 24세	3. 만 26세	4. 만 28세
----------	----------	----------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약정 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Ⅰ 제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 연령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약정 연령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및 ⑦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⑤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3절 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⑥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3절 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⑦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및 그의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약관에서 그(기명피보험자)의 **지명 1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지명하는 1인을 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 (2) 위 '(1)'에서 규정한 그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지명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⑧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⑨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허락한 임시운전자가(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선택한 임시운전 가능 기간에 한하여 해당 승낙피보험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임시운전 가능 기간)

이 보험계약의 만료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 기명피보험자가 요청한 기간(1일 이상, 30일 이하 요청개시일 24시부터 요청만료일 24시 이전까지 효력 유지)을 임시운전 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가차량손해의 보상 관련	77
제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 관련	
[10]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77
제2장 자가차량손해 보상 관련	
[11]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79
[12] 신차기액보상담보(6개월) 특별약관	80
[13] 신차기액보상 확장 담보(12개월) 특별약관	81
[14]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82
[15]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82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84
[16]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84
[17]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 특별약관	85
[18]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 특별약관	87

제3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관련

⑩ 주말 · 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원 · 후유장애 1억원 가입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월요일 08:00를 말하며 휴일은 ①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②근로자의 날 전일 18:00 ~ 익일 08:00의 시간을 말합니다. 상기의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 또는 운전기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정)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정)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정)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정)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및 휴일 사망사고 위로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로금은 피보험자당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사망사고 위로금>

가. 자기신체사고 기입금액의 1배 보장 선택 시

구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사고 위로금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나. 자기신체사고 기입금액의 2배 보장 선택 시

구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사고 위로금	3,000만원	6,000만원	10,000만원

2. 주말 및 휴일 후유장애 위로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후유장애 1~7급 판정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로금은 피보험자당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말·휴일확대보상 특별약관 후유장애 위로금>

가. 자기신체사고 기입금액의 1배 보장 선택 시

구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후유장애 위로금	1급	1,500만원	3,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주) 후유장애 1~7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1~7급 받은 경우

나. 자기신체사고 기입금액의 2배 보장 선택 시

구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후유장애 위로금	1급	3,000만원	6,000만원
	2급	2,700만원	5,400만원
	3급	2,400만원	4,800만원
	4급	2,100만원	4,200만원
	5급	1,800만원	3,600만원
	6급	1,500만원	3,000만원
	7급	1,200만원	2,400만원

주) 후유장애 1~7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1~7급 받은 경우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3.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증거
-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2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⑪ 렌트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하 '회사'라 합니다)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제공합니다. 다만, 동종의 렌트카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종의 렌트카**란은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렌트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 지급)

- ①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 매 사고에 대하여 렌트카의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 가능한 경우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렌트카를 제공할 때 대여비용의 부담은 회사로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제공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렌트카를 사용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항의 렌트카의 제공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를 지급합니다.
- ⑤ 회사가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소 및 환수장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장소로 합니다.

제5조(렌트카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 ① 회사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한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렌트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렌트카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렌트카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손해 중 렌트카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보상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경우에 보상한도는 렌트카 제공 전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의 보상책임 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렌트카를 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때까지로 합니다.
- ④ 위 제1항의 경우에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렌트카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⑫ 신차가입보상담보(6개월)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자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제5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⑬ 신차가액보상 확장 담보(12개월)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보통약관)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제5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⑯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납입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타물체⁽¹⁾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²⁾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기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③ 경미한 손상⁽³⁾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⁴⁾으로 교환수리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TIP.

- (*) 1)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 2)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 3)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외장부품의 손상
- (*) 4)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는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
단,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나. 기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TIP.

- (*) 1) '기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웨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기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 0)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⑯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1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3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 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평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이어 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 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 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기록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 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 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 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평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평크부위에 한하며, 평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립니다.
- ④ 위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계약의 종료)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2개월 미만	1회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4회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2회	10개월 이상	5회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3회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역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멀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⑯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평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차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7.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평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평크부위에 한하며, 평크부위가 2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립니다.
- ④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특약계약의 종료)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2개월 미만	1회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4회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2회	10개월 이상	5회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3회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역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멀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⑩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란 동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말하며 동 법률 제2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평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정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4.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 중 접지면에 평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제공은 1개의 평크부위에 한하며, 평크부위가 2곳에 이상인 경우 추가 부위에 대한 수리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단, 피보험자동차의 특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긴급견인서비스'나 '4.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를 대신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긴급 견인 및 구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신 제공해 드립니다.
- ④ 위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특약계약의 종료)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② 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아래 표에 명시된 이용 횟수 이상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이용 횟수
2개월 미만	1회
2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2회
5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3회
8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4회
10개월 이상	5회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 및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②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역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사전에 파손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후 부득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⑤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상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차량교체시 특별약관의 유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피보험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이 특별약관을 유지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5편 기타	91
[19]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91
[19]-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92
[20]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94
[21] 의무보험 일시당보 특별약관	95
[22] 우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96
[23]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7
[24]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97
[25] 승용차요일제(후할인) 특별약관	98
[26]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100
[27]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101
[28]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102
[29]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104
[30] 자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06
[3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7
[32] 대중교통수단 이용증 상해 특별약관	108
[33] 자녀 피해 보상 특별약관	110
[34]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111
[35] 자녀 할인 특별약관	112
[3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112
[37]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13
[38]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114
[39]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15
[40] 자동비상 제동장치 할인 특별약관	117
[41]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기액 보상 특별약관	118
[42]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119
[43]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119
[44]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21
[45]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22
[46]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23
관련법규	125

제5편 기타

⑯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기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제1절 대인배상 | 제외) 및 제2장 제1절 자 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중승합자동차 및 경·4중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 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금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⑯-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 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 또는 타율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1) 자기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7일 이하 대여 받은 자동차
- ②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③ '렌트카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제공받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것
- ④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보험대차가 아닌 것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계약의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한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흉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 마모,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함으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피보험자가 미약 또는 악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5.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려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금융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사고발생시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
 8. 다른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휴차 혹은 휴업으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릅니다.
 1.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2.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3. 다른 자동차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 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제6조(보상한도)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가 다른 자동차의 보험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제5조제3항의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보상한도가 보험가입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상한도의 보험가입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10조(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이 피보험자 1인당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제2편 제2장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에서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이하 '초과손해액'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 1인당 3억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흉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Tip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㉑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

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내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해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 I 및 제2절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물배상 의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가입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 또는 운전기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① 회사는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빌려준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인승 이하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구급용 자동차(암뷸런스) 또는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㉔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㉕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 ② 대리운전자를 제외한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 (3)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 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시적 대리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
2.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3.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손해
4.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의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업의 종사자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㉙ 승용차요일제(후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4. '마일리지(선험인) 특별약관' 또는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비운행 약정요일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특별약관과는 상관없이 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아래 표와 같은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내에 송금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 계약기간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
*운행일수	1일이하	2일이하	3일이하

* 운행일수 :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

- ②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④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 · 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4.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⑤ 보험계약자는 위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정산금액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㉙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2호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위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제1호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훈더, 후드,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리드,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 센서
- ②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2) 이 특별약관에서 새 부분품가격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동차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신부분품가격(부가세 제외)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1항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2.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제2항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대물배상,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회사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㉗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 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 라. 기명피보험자에게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단, 기명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경우는 제외함)
 - 마.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2019. 6. 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 나.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것 (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여야 함)
 - 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이하 이면서,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을 보험가입 하는 경우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제1조(가입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호의 경우
 -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 입증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2)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 (3)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4)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원
 - (5)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나. 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 다. 자동차등록증
 - 라.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의 경우
- 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다만, 간신계약으로 직전계약 체결 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부양자 및 동거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기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4호의 경우
- 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기입시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㉙ 마일리지(선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2. '승용차요일제(후할인)'을 가입한 계약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사진 위변조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은 경우
 4.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보험료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 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운행정보의 송부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1개월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위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 전 피보

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주행거리 준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기간 동안 운행하기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계좌정보 또는 신용카드 정보의 고지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불한 보험료의 주정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위 제1호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주행거리 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확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지체없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정하는 방식이란 회사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문자 수단 등을 통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차량정보 등을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가입 후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 또는 제4호의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text{연간 주행거리} = \text{일평균 주행거리} \times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 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 까지의 기간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료 할인 및 정산 등)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에 전송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 주행거리가 확인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 또는 취소처리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 미만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⑤ 회사는 위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대인 I · II, 대물 및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자손, 무보험, 자차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의
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2,000km 초과 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3,000km 초과 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5,000km 초과 7,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7,000km 초과 9,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9,000km 초과 1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2,000km 초과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5,000km 초과 18,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18,000km 초과 2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23,000km 초과	0%

㉙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2. '승용차요일제(후할인)'을 가입한 계약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위조, 변조한 경력이 있거나 사진 위변조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은 경우
4. 보험료 정산 방법에 따라 보험료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운행정보의 송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1개월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위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주행거리 준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기간 동안 운행하기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계좌정보 정보의 고지

-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위 제1호의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회사가 주행거리 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및 취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의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기입 후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 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 까지의 기간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활용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 거리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번호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23,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정보가 23,00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대인 I · II, 대물 및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자손, 무보험, 자차 담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의 정산률
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2,000km 초과 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3,000km 초과 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5,000km 초과 7,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7,000km 초과 9,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9,000km 초과 12,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12,000km 초과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15,000km 초과 18,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18,000km 초과 23,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률
23,000km 초과	0%

③)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3절 자기차량손해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에게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시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에 따릅니다.
 ④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② 위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특별약관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블랙박스의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과거 3년 이내 회사가 요청한 블랙박스의 장착사진, 영상기록 정보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및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블랙박스 제조사, 모델명, 부속품가액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착여부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블랙박스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회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대중교통수단 이용증 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대중교통수단 이용증 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발생한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승·하차(대중교통수단 또는 그 부속장치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제외함)하던 중 발생한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 **탑승중**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 객실내의 좌석 및 손잡이 등이 있는 입석과 통로에 올라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외의 장소에 탑승하거나 또는 좌석 위에 올라타 서 있는 경우, 손잡이 등 부속장치에 매달려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반의 대중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3.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사고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시험용(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
6. 대중교통수단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 하던중 발생한 사고
7. 대중교통수단을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4.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보험회사가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인당 1억 원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가신체사고자금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①항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가신체사고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금 청구절차 및 제출서류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해당 항목을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자녀 피해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ip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19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19세 이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학자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만1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자금으로 1사고당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2. 자녀부상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7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의 '자녀부상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3. 자녀성형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성해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의 '성형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③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예부, 복부 등을 제외합니다.

4. 자녀고도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의 만19세 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고도 후유장애(자동차순행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함)가 남은 경우에 1인당 5천만원의 자녀고도후유장애위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률을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신체사고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4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1사고당 보상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고당 보상한도의 종류			
보상한도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 ② 이 특별약관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제2절 대물배상과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3절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자녀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하(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작일자 기준)의 **자녀**가 있는 경우
- ②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 0 특별약관에서 **자녀**란
 1. 법률상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양자녀, 계자녀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 또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태아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1조(가입대상) ①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함)
 2. 출산 예정인 자녀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신확인일 및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류(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② 회사가 '제1조(가입대상) ①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가입자격 조건의 증명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적용기간)

①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다만, 보험기간 중도에 '제1조(가입대상) ①항'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이 특약의 적용시작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일 경우 임신확인일
2. 재혼 또는 입양의 경우 호적등재일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④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가입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기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기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해당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기액 중 낮은 기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③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⑤ 위 제1항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 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3조,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로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기능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환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도 동시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때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 공급이 곤란하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OEM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기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기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㊱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최초 출고된 차량이고, 해당 장치가 청약일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과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특별약관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라 함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차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말합니다. 또한, 차로를 벗어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차선유지 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도 포함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장치 작동유지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 ②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고장 혹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등으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체 없이 수리하여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제3조(장치 작동유지 의무)를 더 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조사를 위한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고장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해당 사고 이전부터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계약이 성립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해지됩니다.
 1.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린 경우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피보험자동차가 제1조(가입대상)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 대체된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사무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기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향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인등록증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기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4조(전환 취소)

-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④ 자동비상 제동장치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비상 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최초 출고된 차량이고, 해당 장치가 청약일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비상 제동장치**'라 함은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를 말합니다. 또한, 제동 장치 제어 기능이 있고 경고 기능만 있는 경우,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자동비상 제동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자동비상 제동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장치 작동유지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동비상 제동장치를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 ② 자동비상 제동장치의 고장 혹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등으로 자동비상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체 없이 수리하여 자동비상 제동장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제3조(장치 작동유지 의무)를 더 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동비상 제동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조사를 위한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비상 제동장치의 고장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해당 사고 이전부터 자동비상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계약이 성립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비상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해지됩니다.
 - 1.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비상 제동장치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린 경우
 -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동비상 제동장치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3. 피보험자동차가 제1조(가입대상)의 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 대체된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전기자동차인 경우로서,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동 법률 제2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하여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text{보상내용} = \boxed{\text{새 부분품의 가액}} - \boxed{\text{감가상각 적용 후 새 부분품의 가액}}$$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정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2. '신차가액보상담보(6개월) 특별약관' 또는 '신차가액보상 확장 담보(12개월)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란 동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말하며 동 법률 제2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회자·폭발 또는 감전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2. 피보험자동차의 **중요한 부품**의 전기적 손해

〈용어풀이〉

- ①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이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을 위하여 충전설비를 조작한 시점부터 충전 완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전설비의 접촉 여부는 무관합니다.
- ②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중요한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⑤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개시일의 보험기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란 동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말하며 동 법률 제2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기액의 13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면제)

-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①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

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정보를 제휴자동차제조사(이하 '자동차제조사'라 함)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풀이>'2'의 '나'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사고통보장치의 장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④ 제출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의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2.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켜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해당 정보가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3.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 ⑤ 이 특별약관은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또는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입니다.

제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 ① 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5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기입 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5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④⑤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점수 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1,000km 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안전운전점수(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 간의 제휴사업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점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4. 회사가 요청한 점수를 하위 또는 조직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또는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약관 가입 시 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의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점수 측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
- ③ 회사는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자체 없이 정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점수 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1,000km 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안전운전점수(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회사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 간의 제휴사업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점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회사가 요청한 점수를 하위 또는 조직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또는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사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약관 가입 시 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의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점수 측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
- ③ 회사는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자체 없이 정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 0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관련 법 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일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 1항 및 4항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 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 ⑤ 긴급자동차, 부상을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 금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및 제10호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함.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1.동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받은 경우, 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등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방법 등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명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 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 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 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증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할 때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지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일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투닝”이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라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순(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 차량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기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한 경우
-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길음하여 자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장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인에 취사 및 앙장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 2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0. "자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생략)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이하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1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개정 2021.1.5〉

*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자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적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제의 자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정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건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 batching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기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 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건설기계명	범위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mer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 · 바케식 · 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내에서 기록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신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 · 양수의 인기를 받아

-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0. 4. 3.〉
-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 · 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원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4. 3.〉
1. 양도 · 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4. 3.〉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 · 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자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3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인”이란 자 서 대통령령 말합니다.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 발전법 제1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균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국내에서 가족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적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기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3.)
 -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4. 3.〉
 1.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4. 3.〉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